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행정협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('15.11) 이후 지방자치법 (제156조)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(제95조, 제101조)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 하고, 협의회 회의 개최시기를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으로 일원화 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행정안전부령 제 호

행정협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행정협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95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협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”를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10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95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96조”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회의)”를 “(운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한다.

제6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6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73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95조 및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협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10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----- ----- -----.
제2조(구성)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의 구성은 수도권협회의의 경우 서울특별시·인천광역시·경기도지사로 하되 특히 필요한 때에는 강원도지사 및 충청북도지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, 대도시권협회의의 경우 관련 광역시장, 특별자치시장,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, 그 밖의 협의회는 관련 시장·군수·자치구의 장으로 한다.	제2조(구성)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96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4조(회의) ①협회의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, 정기회의는 매년 2월부터 3월사이와 8월부터 9월사이에 각 1회 개최하며, 수시회의는 관계	제4조(운영) <삭 제>

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	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6조(협의사항의 조정) 「지방자치법」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요청은 수도권협회의 또는 대도시권협회의에 있어서는 2회이상 협의를 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.	제6조(협의사항의 조정) 「지방자치법」 제173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